

●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정관

개 정	2013. 9. 27.	제 201 호	제 정	2004. 9. 3.	제 1 호
개 정	2013. 12. 2.	제 204 호	개 정	2004. 12. 14.	제 22 호
개 정	2014. 2. 28.	제 223 호	개 정	2006. 1. 16.	제 30 호
개 정	2014. 11. 4.	제 236 호	개 정	2006. 11. 26.	제 45 호
일부개정	2015. 7. 1.	제 250 호	개 정	2007. 2. 20.	제 51 호
일부개정	2018. 1. 1.	제 291 호	개 정	2007. 12. 28.	제 59 호
일부개정	2018. 5. 2.	제 308 호	개 정	2008. 8. 1.	제 67 호
일부개정	2019. 7. 17.	제 328 호	개 정	2008. 11. 24.	제 74 호
			개 정	2009. 8. 3.	제 99 호
			개 정	2009. 9. 29.	제 102 호
			개 정	2009. 12. 30.	제 109 호
			개 정	2009. 12. 31.	제 115 호
			개 정	2010. 4. 14.	제 125 호
			개 정	2010. 12. 3.	제 129 호
			개 정	2010. 12. 31.	제 133 호
			개 정	2011. 2. 17.	제 135 호
			개 정	2011. 10. 28.	제 158 호
			개 정	2012. 6. 28.	제 176 호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「지방공기업법」과 「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함으로써 자치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구민의 생활편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07.2.20.><개정 2015. 7. 1.>

제2조(명칭) 이 법인은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이라 칭한다.<개정 2015. 7. 1.>

제3조(사무소)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 546에 둔다<개정 2013.12. 2.>

②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(이하 “이사장”이라 한다)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의 승인을 받아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.<개정 2015. 7. 1.>

제4조(자본금)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고, 설립자본금은 6억원으로 하며, 서울특별시 성동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가 현금 및 현물로 전액 출자한다.<개정 2015. 7. 1.>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본금 납입시기와 방법, 납입재산은 구청장이 정한다.

제5조(광고방법) 공단이 공고할 사항은 성동구보 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고, 고시사항은 성동구보에 게재한다. 다만,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시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.

제6조(규정의 제정) ①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를 규정으로 정한다.

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개정 2015. 7. 1.>

1.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
2. 인사규정, 임직원의 보수규정(급여, 연봉제, 복리후생 규정 포함) 및 퇴직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·개정·폐지에 관한 사항
3. <삭제 2007.2.20.>

제 2 장 임원 및 직원

제7조(임원)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.

<개정 2009.12.31.><개정 2015. 7. 1.>

② 이사장은 「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11조에 따라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, 이사장·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명하며,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. 단, 조례 또는 이 규정에 따라 당연히 임명되는 비상임감사 또는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.<개정 2007. 2.20.><개정 2009.12.31.><개정 2015. 7. 1.>

③ 비상임 이사는 구청 국장 중 구청장이 지정하는 2명의 당연직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을 선임한다.<개정 2015. 7. 1.>

1. 세무 및 회계, 법률, 경영 전문가
2. 교통, 시설물관리, 생활체육 전문가
3. 국내·외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행정, 경영, 경제, 법률, 회계 분야를 5년 이상 강의한 사람<개정 2015. 7. 1.>
4.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부처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<개정 2015. 7. 1.>
5. 그 밖에 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 각 호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<개정 2010.12. 3.><개정 2015. 7. 1.>

④ 감사는 구의 감사담당관을 당연직 비상임으로 한다.

제8조(임원의 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임 될 수 있다.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,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09.12.31.>

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「지방공기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.<신설 2009.12.31><개정 2015. 7. 1.>

③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(起算)한다.<개정 2009.12.31.><개정 2015. 7. 1.>

제9조(임원추천위원회)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되,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.<개정 2015. 7. 1.>

-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6조의3에 따른다.<개정 2015. 7. 1.>
- ③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종료된다.<개정 2015. 7. 1.>
-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2015. 7. 1.>
-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임원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팀의 장이 된다.<개정 2015. 7. 1.>
-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.<개정 2015. 7. 1.>

제10조(임원의 직무)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
- ②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.<개정 2015. 7. 1.>
- ③ 이사는 「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직제규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·관리하며,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(본부장), 구청장이 지정하는 비상임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0.4.14.><개정 2015. 7. 1.>
- ④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.

제11조(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.<개정 2014.11.4.><개정 2015. 7. 1.>

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<개정 2015. 7. 1.>
2. 미성년자<개정 2018. 1. 1.>
3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개정 2015. 7. 1.><개정 2018. 1. 1.>
4. 법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개정 2015. 7. 1.><개정 2018. 1. 1.>
5.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개정 2015. 7. 1.><개정 2018. 1. 1.>
6. <개정 2015. 7. 1.><삭제 2018. 1. 1.>
7. <개정 2015. 7. 1.><삭제 2018. 1. 1.>
8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<신설 2018. 5. 2.>

제12조(조직 및 정원) 공단의 조직 및 정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.<개정2004.12.14.><개정2006.1.16.><개정2007.2.20><개정2007.12.28><개정 2008.8.1.><개정2008.11.24.><개정2009.9.29.><개정 2009.12.30.><개정 2009.12.31><개정 2010.12.31><개정 2011. 2.17><개정 2011.10.28.><개정 2012. 6.28.><개정 2013. 9.27.><개정 2014. 2.28.><개정 2015. 7. 1.>

제13조(직원의 임면) 공단의 직원은 「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인사규정」(이하 “인사규정”이라 한다)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.<개정 2015. 7. 1.>

제14조(임·직원의 복무) 임·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복무규정으로 정한다.<개정 2015. 7. 1.>

제15조(임·직원의 겸직제한)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구청장의,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 다만,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<개정 2015. 7. 1.>

제16조(임원의 대표권 제한) 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은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.<개정 2015. 7. 1.>

② 공단이 이사에게 또는 이사가 공단에게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.<개정 2015. 7. 1.>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.<개정 2015. 7. 1.>

제17조(비밀누설 금지 등) 공단의 임·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<개정 2015. 7. 1.>

제18조(임·직원의 보수) 임·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 다만,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2015. 7. 1.>

제19조(신분보장) 공단의 직원은 인사규정에 따른 당연퇴직 또는 징계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면직되지 아니한다. 다만, 계약에 따라 임용된 직원과 경영평가 결과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개정 2015. 7. 1.>

제20조(대리인의 선임)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임·직원 중에서 공단업무의 전반 또는 일부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.<개정 2015. 7. 1.>

제 3 장 이사회

제21조(설치 및 구성)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.

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
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④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2015. 7. 1.>

제22조(의결사항)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1.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
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3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
4. 조직,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

5. 중요한 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6. 중요 재산의 취득, 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
7. 중요한 대행사업의 수탁, 위탁 및 재 위탁에 관한 사항
8. 중요한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
9.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<본항신설 2009.12.31>
10. 그 밖에 업무운영에 필요하다고 이사회 의장이 인정하는 사항<개정 2009.12.31.><개정 2015. 7. 1.>

제23조(의장 및 회의소집)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사 3명의 요청이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하며,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 다만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<개정 2009.12.31><개정 2011. 2.17><개정 2015. 7. 1.>

제24조(의사의결 정족수)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개정 2010.12. 3.>

②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부의사항 중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.<개정 2009.12.31.><개정 2015. 7. 1.>

제25조(운영규정)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.<개정 2015. 7. 1.>

제 4 장 사 업

제26조(사업) 이사장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<개정 2015. 7. 1.>

1.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
2.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 및 운영
3. 차량의 견인 및 견인차량 보관소 관리 및 운영
4.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
5. 구청사와 부설주차장 등 공공시설물 관리 및 운영
6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위탁사업<개정 2015. 7. 1.>
7. 평생교육시설 관리 및 운영<신설 2009.8. 3.>
8. 청소년관련시설 관리 및 운영<신설 2009.8. 3.>
9. 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<신설 2011. 2.17.><개정 2015. 7. 1.>
10.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·지정하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에 사전 보고된 사업[2011.2.17 9호에서 10호로 이동]<개정 2015. 7. 1.>

제27조(사업계획) ① 이사장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로 확정한다.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<개정 2015. 7. 1.><개정 2019. 7. 17.>

② 이사장은 사업계획서를 이사회 개최 30일 전까지 이사들에게 보내야 한다.<개정 2009.12.31> <개정 2014.11.4.><개정 2015. 7. 1.>

③ 이사장은 사업계획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보고된 사업계획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구청장이 시정을 명하는 경우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정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제28조(대행사업) ① 이사장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.<개정 2015. 7. 1.>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사업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<개정 2015. 7. 1.>

③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.<개정 2015. 7. 1.>

제29조(대행사업의 비용부담) 제28조에 따른 대행사업의 비용의 부담은 영 제63조의 규정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.<개정 2014.11.4.><개정 2015. 7. 1.>

제 5 장 재무회계

제30조(사업연도) 공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<개정 2015. 7. 1.>

제31조(예산) ① 공단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작성하고,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로 확정한다.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<개정 2009.12.31><개정 2015. 7. 1.><개정 2019. 7. 17.>

② 이사장은 예산서를 이사회 개최 30일 전까지 이사들에게 보내야 한다.<개정 2014.11.4.><개정 2015. 7. 1.>

③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이를 수정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.<개정 2015. 7. 1.>

제32조(결산) ① 이사장은 매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 7. 1.>

② 이사장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, 법 제66조제2항에서 정하는 서류 및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<개정 2015. 7. 1.>

제33조(회계의 원칙) ① 이사장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 7. 1.>

② 이사장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 회계처리 할 수 있으며,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.<개정 2015. 7. 1.>

제34조(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) ① 이사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.<개정 2015. 7. 1.>

제35조(수입금의 처리) ① 공단의 사업별 수입금은 해당 사업연도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이익이 생긴 때에는 손익금의 처리순서에 따라 처리한다. 다만, 구청장이 사업연도 중에 사전 구 세입에 납입을 요구하는 때에는 수입금 일부에 대해서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 중 구 세입에 납입할 수 있다.<개정 2015. 7. 1.>

② 공단이 수탁계약에 따른 대행사업 위탁료를 받아 사업을 시행할 경우, 사업별수입금은 구 수익으로 하며, 매월 수입금을 정산하여 다음 달 지정일까지 구 세입에 납입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 7. 1.>

제36조(손익금의 처리) ① 이사장은 사업연도마다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 7. 1.>

1. 이월결손금의 보전

2. 구 세입에의 납입

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자 할 때에는 결손의 내역과 이유를 구청장을 경유하여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 7. 1.>

③ 이사장은 사업연도마다 결손이 생긴 때에는 다음연도에 이월한다.<개정 2015. 7. 1.>

제37조(물품관리) 이사장은 물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표준화하고, 사용 및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, 물품수급관리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38조(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) ① 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<개정 2015. 7. 1.>

2.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 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 가격과 실제공급 가격의 차액<개정 2015. 7. 1.>

3. 그 밖에 성질상 공단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<개정 2015. 7. 1.>

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이사장은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 7. 1.>

제39조(기금조성 등) ① 이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의결과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단에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.<개정 2011. 2.17><개정 2015. 7. 1.>

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요청 할 수 있다.<개정 2015. 7. 1.>

제40조(단기차입금 등) ① 이사장은 예산 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으며,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.<개정 2015. 7. 1.>

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 7. 1.>

제 6 장 보칙

제41조(정관의 변경)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제42조(업무상황의 공표) ① 이사장은 법 제7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 7. 1.>

② 이사장은 결산서, 재무제표, 연도별 경영목표, 경영실적 평가결과, 영 제44조제1항을 구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 7. 1.>

제43조(경영평가) ① 이사장은 법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전문기관에 따른 경영평가를 받아야 한다.<개정 2015. 7. 1.>

② 이사장은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구청장의 지도, 자문 및 권고 또는 경영개선 명령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1. 임직원에 대한 감봉·해임 등의 인사조치

2. 사업규모의 축소·조직개편 및 인력조정

3. 법인의 청산 및 민영화

4. 그 밖에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개정 2015. 7. 1.>

제44조(공무원의 파견 등) ① 이사장은 업무 수행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공단 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<개정 2009.12.31><개정 2013. 7. 1.>

② 이사장은 공단에 파견 온 공무원이나 겸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단이 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45조(권리의무의 승계) 공단은 구가 출자한 자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.

제46조(공인의 비치) 이사장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인조례」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.<개정 2015. 7. 1.>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최초임원의 임기) 공단의 최초임원의 임기는 공단이 설립된 날로부터 기산한다.

제3조(최초의 사업연도 및 사업계획) ① 공단 최초의 사업연도는 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 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② 공단 최초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는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4조(경과규정)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최초의 임직원 임명 및 직제규정, 인사규정 등 제 규정과 금고지정 등 공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.

제5조(예산의 경과조치) ① 이 정관에 의하여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단의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.

③ 공단의 설립연도의 예산은 공단설립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

부칙(2004.12.14)

(시행일) 이 정관은 2004. 12. 14. 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06.1.16)

(시행일) 이 정관은 2006. 1. 16. 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07.2.7)

(시행일) 이 정관은 구청장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07.12.27)

(시행일) 이 정관은 구청장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08.7.29)

(시행일) 이 정관은 구청장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08.11.13)

(시행일) 이 정관은 구청장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09. 7.21)

(시행일) 이 정관은 구청장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09. 9.23)

(시행일) 이 정관은 구청장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09. 11.12)

(시행일) 이 정관은 구청장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9. 12.29)

(시행일) 이 정관은 구청장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0. 4.14)

(시행일) 이 정관은 구청장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

정 관

부칙(2010. 12. 3)

(시행일) 이 정관은 구청장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0. 12. 31)

(시행일) 이 정관은 구청장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1. 2. 17)

(시행일) 이 정관은 구청장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1. 10. 19)

(시행일) 이 정관은 구청장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2. 6. 28)

(시행일) 이 정관은 구청장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3. 9. 27)

(시행일) 이 정관은 구청장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3.12. 2)

(시행일) 이 정관은 구청장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4. 2. 28)

(시행일) 이 정관은 2014. 3. 1. 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4.11. 4)

(시행일) 이 정관은 구청장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5. 7. 1.)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8. 1. 1.)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9. 7. 17.)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구청장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<개정 2006.1.16><개정 2007.2.20><삭제 2007.12.27>

[별표 2]<개정 2004.12.14><개정 2006.1.16><삭제 2007.2.20.>